

# 학생선도 규정

제정 : 2010.09.28  
개정 : 2012.03.09  
2012.05.14  
2014.02.18  
2016.03.21  
2017.03.06

## 목 차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3
제2조 선도원칙	3

### 제2장 위원회

제3조 구성	3
제4조 기능	3
제5조 심의	3
제6조 진술	3
제7조 재심	3
제8조 기록	3

### 제3장 징 계

제9조 종류와 내용	3
제10조 방법	4
제11조 기준	4
제12조 절차	4
제13조 결정	5
제14조 해제	5

제15조 선도	5
제16조 퇴학 처분	5
제17조 제한	5

### 제4장 규정의 개정

제18조 규정의 개정	6
제19조 기타	6

부 칙	6
-----	---

[별첨 제1호] 학생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상·벌점제 규정	7
--------------------------------	---

[별첨 제2호] 학생징계기준	11
-----------------	----

주무부서 : 학생지원부(T. 2167)

# 학생선도 규정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와 학칙 제40조(징계)에 의거 학생 징계를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3.21>
- 제2조(선도원칙)**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한다.  
② 학생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 선도는 “학생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상·벌점제 규정”(별첨 제1호) 운영을 통하여 선도 위주로 처리한다.

## 제 2 장 학생학사위원회

- 제3조(구성)** ① 학생학사위원회는 학칙 제53조 및 학생학사위원회 규정 제3조(구성)에 의거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03.21>  
② <삭제 2016.03.21>  
③ <삭제 2016.03.21>
- 제4조(기능)** 학생학사위원회 규정 제4조(기능)에 의거 학생에 대한 징계 사안이 있을 시 소집하고 이를 심의한다. <개정 2017.03.06>
- 제5조(심의)** 본 심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안을 결정한다.
- 제6조(진술)** ①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가 사정상 불참하는 경우에는 의견서 또는 위임장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교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목격자 등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재심)** 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재심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기록)** 본 위원회의 회의록은 사안 업무 담당자가 기록하여 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16.03.21>

## 제 3 장 징 계

- 제9조(종류와 내용)** 징계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 3-5일 이내의 교내 봉사활동  
2. 사회봉사 : 6-10일 이내의 사회 봉사활동

3. 특별교육 이수 : 11일 이상의 특별교육 실시 <개정 2016.03.21>  
4. 등교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등교정지 <신설 2016.03.21>  
5. 퇴학처분 <신설 2016.03.21>

**제10조(방법)** 징계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1. 수업을 받게 하고, 담임교사 및 상담 지도를 받도록 한다.  
2. 징계 기간 중 교내 봉사활동 및 반성문 집필을 받도록 한다.  
- 교내 봉사활동은 학교환경 미화작업, 교내 도서관 도서정비, 교재 및 교구 정리 등 <신설 2016.03.21>
- ② 사회봉사  
1. 출석으로 처리하고, 특별지도를 받도록 한다.  
2.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행한다. <개정 2016.03.21>  
-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 미화, 교통 안내, 거리 질서 유지 등 <신설 2016.03.21>  
-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공공문헌정보실 업무보조 등 <신설 2016.03.21>  
-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의 청소, 식사보조, 목욕시키기 등 <신설 2016.03.21>
- ③ 특별교육이수 <삭제 2016.03.21>  
1. 출석으로 처리하고, 특별지도를 받도록 한다. <신설 2016.03.21>  
2.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신설 2016.03.21>  
-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 학교 등의 교육 이수 <신설 2016.03.21>  
-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신설 2016.03.21>  
- 상담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하여 1:1로 상담치료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이수 <신설 2016.03.21>
3.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신설 2016.03.21>
- ④ 등교정지 <신설 2016.03.21>  
1.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며, 특별지도를 받도록 한다. <개정 2017.03.06>  
2. 등교정지 기간은 학생생활기록부의 출결사항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되며,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신설 2016.03.21>
- 제11조(기준)** ‘학생징계기준’(별첨 제2호)에 의해 절차를 진행한다.
- 제12조(절차)** ① 징계사항에 대하여 선도 담당은 진상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7.03.06>  
② 징계는 학생학사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여 교장에게 보고하고, 교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개정 2017.03.06>

**제13조(결정)** ① 징계 기간은 학생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이 정한다. <개정 2016.03.21>

② 징계 결정전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등교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단, 등교 정지 기간은 징계 기간에 산입한다.

③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토록 한다. <개정 2016.03.21>

④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라도 고사 기간 중에는 고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고사 기간은 징계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징계조치 시 벌점을 동시에 부과하는 이중처벌은 하지 않는다. <신설 2016.03.21.>

⑥ 공식적인 징계 조치(기간) 이외의 수업 배제를 지양한다. <신설 2017.03.06>

**제14조(해제)** ① ‘특별교육이수’ 및 ‘등교정지’의 해제는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 학생지원부장이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교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② 징계 해제 학생은 앞으로 교칙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선도)** 교장은 징계 해제된 학생에게 개별 상담토록 하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철저히 지도하도록 한다.

**제16조(퇴학 처분)** 퇴학 처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퇴학 처분의 기준은 ‘학생 징계 기준’ (별첨 제2호)에 따른다.

② 교장은 퇴학 처분을 하기 전에 교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교장은 퇴학 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장은 퇴학 처분을 할 때에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 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 교육 훈련 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제한)** ①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해당 학기 포함 2개 학기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제한을 받는다. <신설 2016.03.21>

1. 학교장상 수여

2. <삭제 2017.03.06>

3.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4. 학술대회, 국외과학전람회, 각종 탐구대회 지원 <신설 2016.03.21>

5. 단기 교환학생 프로그램, 장기 교환학생 프로그램, KSA Honors\* Program 지원 <신설 2016.03.21>

6. 3학년 위탁교육 프로그램 지원 <신설 2016.03.21>

7. 기타 교장이 정한 각종 선발 <신설 2016.03.21>

② 징계를 받은 학생은 졸업상 수여에 제한을 받는다. <개정 2017.03.06>

③ 사회봉사 이상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생운영위원회 임원과 학급 반장의 지원 및 자격에 제한을 받는다. <신설 2017.03.06>

#### 제 4 장 규정의 개정

**제18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학생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개정 2016.03.21>

**제19조(기타)**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특정사항의 처리 및 시행상의 세칙은 학생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16.03.21>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3.09>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5.14>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2.18>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3.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03.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첨 제1호]**

**학생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상·벌점제 규정**

**제1조 (목적)**

① 본 규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생활 전반에서 바람직한 생활 태도를 습관화 하고 내면화하여 건전한 교풍을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본 규정은 학생학사위원회를 통한 징계에 앞서 학생 생활 규정을 위반한 학생을 일차적으로 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운영방법)** 학생기본생활 상·벌점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한다.

① 학생기본생활 상·벌점제는 ‘학교생활 상·벌점제’와 ‘생활관 생활 상·벌점제’로 분리하여 운영하되, 생활관 생활 상·벌점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생활관 운영 규정”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② 학교생활 상·벌점제는 ‘학교생활 상·벌점 카드’(양식 제1호)에 의거하며, 생활관 생활 상·벌점제는 ‘생활관 생활 상·벌점 카드’(양식 제2호)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③ 모든 교직원은 ‘학교생활 상·벌점 카드’의 규정을 위반한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적절히 지도한 후 ‘학교생활 상·벌점 카드’를 작성하여 학생 확인 후 벌점을 부과한다.

④ 담임교사 및 사감은 ‘생활관 생활 상·벌점 카드’의 규정을 위반한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적절히 지도한 후 ‘생활관 생활 상·벌점 카드’를 작성하여 학생 확인 후 벌점을 부과한다.

⑤ 상·벌점 입력은 학생지원부와 사감실에서 한다.

⑥ ‘학교생활 상·벌점 카드’는 학생지원부에서 관리하고 ‘생활관 생활 상·벌점 카드’는 사감이 관리한다.

⑦ 학교생활 벌점과 생활관 생활 벌점은 3년간 누적 관리하여 각종 학생 지원 업무(대외상 수상자 및 해외위탁교육생 선정 등)에 반영한다.

**제3조 (상·벌점 관리)** 본 규정에 의해 누적된 벌점은 아래와 같이 관리할 수 있다.

① 동일 항목을 월 3회 반복하여 위반한 때에는 4회 위반부터 그 항목의 기준 벌점 2배를 부과한다.

② 생활 선도교육 대상자는 매일 말일 기준으로 상점과 벌점을 상계하여 정한다.

③ 생활 선도교육 벌점의 적용은 학년 단위로 하되, 학년 말의 생활 선도교육 대상자는 다음 학년 첫 생활 선도교육에서 지도한다. (단, 학생 개인별 상·벌점 누가 기록은 진학을 위한 수료 및 졸업 시까지 누가 관리한다.)

④ 생활 선도교육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벌점 5점을 부과한다.

**제4조 (중복 규정 적용)** 벌점이 중복될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① 동일한 행위로 2가지 이상 벌점을 받아야 할 경우, 그 최상위 벌점만 적용한다.

② 하루에 같은 항목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된 경우, 한 번만 적용한다.

**제5조 (벌점 누적 학생 지도 및 조치)** 이 규정에 의하여 벌점이 누적된 학생은 아래와 같이 지도하고 조치한다.

① 반성문 제출

- 벌점이 6점에 해당하는 자는 담임교사와 상담을 하고 반성문(1,000자 이상)을 사감실로 제출한다. <개정 2016.03.21> 정당한 사유 없이 반성문 미제출 시 (일주일 이내) 벌점 3점을 부여한다(선도교육프로그램 실시)

- 반성문을 제출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벌점을 1점 감점한다.

- 또한 희망하는 경우 교내 봉사활동을 사감실에 신청하여 1회에 한하여 이행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였을 경우 벌점을 1점 감점한다. <개정 2016.03.21>

② 선도 교육

- 벌점 9점 이상이 되면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담임 및 상담선생님과 상담을 각각 실시한다.

- 학교에서 제공하는 영상물을 시청하고 소감문을 학생성장센터로 제출한다.

- 선도교육 내용은 교내청소 (1시간씩 2회) 학생성장센터로 확인서 제출, 반성문 (1,000자 이상) 2회(시작일, 종료일) 제출로 한다.

- 또한 백양산 등반 및 환경정화 활동을 학생성장센터 선생님의 인솔 하에 각 1회씩 해야 한다. <개정 2016.03.21>

- 선도 교육을 수행한 경우는 1회에 한해 벌점 2점을 감한다.

- 정당한 사유없이 선도교육 프로그램 미이수 시(2주일이내) 벌점 3점을 부과한다.

③ 학교 내의 봉사

- 선도 교육을 1회 받은 후 다시 벌점 누적 9점이 되면 ‘학교 내의 봉사’로 징계할 수 있다.

- 이 경우 학부모에게 즉시 통보하고 TC(Teachers Conference)를 운영하고, ‘학교 내의 봉사 3일’에 처한다.

④ 사회봉사

- 벌점 누적이 12점이 되면 학부모에게 즉시 통보하고 학생 학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봉사’로 징계할 수 있다.

⑤ 특별교육 이수

- 벌점 누적이 16점이 되면 특별교육 이수로 징계할 수 있다.

⑥ 등교정지 또는 퇴학처분 <개정 2016.03.21>

- 연중 벌점 누적이 20점이 되면 등교정지 또는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03.21>

⑦ 연간 누적 상·벌점은 매년 1학기 개학일 기준 초기화한다.<개정 2016.03.21>

⑧ <삭제 2016.03.21>

⑨ <삭제 2016.03.21>

⑩ 지도에 관련된 학생 기록물은 학생지원부에서 보관·관리한다.

⑪ 2학기 학기말 상·벌점 및 징계는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 1, 2학년의 경우 상위 학년 진급 직후 상·벌점제 규정에 의해 실시한다.

- 3학년의 경우 졸업입시의 시 별도 심의하여 결정된 내용은 이수하게 하고, 이수결과에 따라 졸업유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등교정지 적용)** ‘학생 징계 기준’ 적용 시 사회봉사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교장은 기간을 정하여 등교정지를 명할 수 있다.

[양식 제1호]

학교생활 상·벌점 카드

<개정 2017.03.06>

상 점					
연번	내 용	상점	연번	내 용	상점
1	학생회 캠페인(1주)	1	5	학급모임 성실 (주5회 이상 학급 모임 시 지각/결석이 없는 경우 분기별 각 1회 부여)	2
2	선행 활동	1	6	선도교육 프로그램 이수	2
3	봉사 활동 (시수 부여 안된 봉사 활동)	1	7	기타(교직원 특별 추천)	1~5
4	학기별 무벌점 (생활·생활관 벌점 없을 때 부여)	3			

벌 점					
연번	내 용	벌점	연번	내 용	벌점
1	수업 무단결석	3	11	일과 시간 중 클럽실 무단출입	2
2	수업 중 엎드려 자는 행위	2	12	도서 연체 벌점 부여 (7일당 1점)	1
3	수업태도 불량 및 수업시간 지각	1~5	13	강의실/실험실 물품(장비/책걸상) 임의 이동/사용	2
4	자습 태도 불량(소란 등)	1	14	학교 물품/시설 미반납, 파손 또는 분실	3
5	도서관·자습실 정리정돈 불량 또는 음식을 반입(개봉 전은 제외)	2	15	정해진 곳(생활관) 외에서 게임하는 행위(게임하는 것 시형 포함)	5
6	학생 복장 및 두발 규정 위반	1	16	생활관 외 건물 내에서 누워 자는 행위	1
7	공식 행사 불참	2	17	생활관 외의 장소에서 장옷 착용 또는 일과시간 내 슬리퍼 착용	1
8	공식 행사 지각 또는 태도 불량(스마트폰 사용, 잡담 등)	1	18	지시불이행(클럽활동, 위탁교육, 리더십활동 등)	3~5
9	외부음식 반입(월-목)	5	19	기타(상기 항목 외의 위반 행위)	1~5
10	연구실, 실험실, 자원부서실, 보건실 무단출입	5			

내용 (번호)	일시	상점 벌점	학생 확인		지도 교사
			학 번	성 명	
	20 . . .	점		인	인
참고 사항 (세부 사항 및 지도 내용)					

[양식 제2호]

생활관 생활 상·벌점 카드

<개정 2017.03.06>

상 점					
연번	내 용	상점	연번	내 용	상점
1	생활관 선행활동	1	5	반성문 제출	1
2	생활관 봉사활동	1	6	선도교육 프로그램 이수	2
3	모범생활상(모범방) 수상	1	7	기타 (사감 특별 추천)	1~5
4	생활관 방정소 우수	1			

벌 점					
연번	위반 내용	벌점	연번	위반 내용	벌점
1	복장 및 두발불량	1	14	공동장소 개인용품 방치	1
2	정리 정돈 불량 2회	1	15	전열기 무단 사용 및 비정상적 전기 사용	2
3	음식을 반입 및 취식	1-3	16	생활관 기물 고의 파손	3
4	우편물/택배 수령 위반 2회	1	17	노트북 미제출	2
5	정호 불참	2	18	생활관 컴퓨터 프린터 사용시간 위반	1
6	정호 지각	1	19	남의 방에서 취침하는 행위	3
7	퇴실 시간 위반	1	20	남의 방 무단출입	2
8	퇴실 시 미소등	1	21	주인 없는 방(공실) 무단출입	5
9	귀고 시간(22:30) 위반	2	22	생활관 폐쇄시간 무단출입	2
10	소등 시간 위반	1	23	생활관 폐쇄시간 허가 출입 2회	1
11	소등 이후 소란 행위	3	24	생활관 무단 잔류 (퇴실 시간 10분 이후)	3
12	생활관 내 소란 행위	1	25	귀가 일 무단잔류(미귀가)	5
13	생활관내 학교 물품 (침대, 옷장, 책장 등) 임의 이동	2	26	기타 (상기 항목 외의 위반 행위)	1~5

내용 (번호)	일시	상점 벌점	학생 확인		지도 교사
			학번·성명(인)	학번·성명(인)	
	20 . . .	점	인	인	인
참고 사항 (세부 사항 및 지도 내용)					

[별첨 제2호]

학 생 징 계 기 준

- 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 내의 봉사’에 처할 수 있다.
  1. 생활 선도 교육을 1회 받은 후 다시 별점 9점 이상인 자.
  2. 기본 생활 습관과 수업 태도가 불량하고 면학 분위기를 저해한 자.
  3. 학교 게시물을 고의로 훼손한 자.
  4. <삭제 2017.03.06>
  5. 점호 후 노트북 부정 사용한 자.
  6. 이상 각 항에 상당하는 행위를 한 자.
  
- ②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내의 봉사’ 또는 ‘사회봉사’에 처할 수 있다.
  1. 연간 누적 별점이 12점인 자.
  2. 학교나 교사의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고의로 위반했거나 거부한 자.
  3. 도박성 행위를 한 자. (사행행위 등)
  4. 외설물(음화, 불량서적 등) 소지하거나 유포한 자.
  5. 학교를 무단이탈한 자. (월장 등)
  6. 무단가출한 자.
  7. 무단결석이 4일 이상인 자.
  8. 교외에서 흡연, 음주한 자.
  9. 건전하지 못한 이성교제를 하는 자.
    - 이성간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DVD방 등)
    - 허락받지 않는 이성간 여행
    - 공개된 장소에서의 애정표현
    - 과도한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입맞춤 등)
    - 남·여 둘만이 밀폐된 공간에 머물다 적발되는 경우.
  10. 성인용품 소지 및 사용.
    - 음란물 공유(채팅 또는 동영상, 사진 등)
  11. 이상 각 항에 상당하는 행위를 한 자.
  
- ③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봉사’에 처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징계를 받은 후 동일 학년에서 재차 ‘학교 내의 봉사’ 징계에 상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학교봉사 징계 기간 중 개전의 정이 없는 자.
  3. <삭제 2017.03.06>
  4. 외설물을 교내에 회람한 자.
  5. 교장의 허가 없이 외부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6. 학생 출입금지 업소에 출입한 자.
  7. 학교 내의 전산시스템에서 권한 밖의 정보를 열람한 자.
  8.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자.

- 9. 교내에서 흡연, 음주한 자.(소지 포함)
- 10. 이상 각 항에 상당하는 행위를 한자.

- ④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 이수’, ‘등교정지’에 처할 수 있다.
  1. 연간 누적 별점이 16점인 자
  2. 상습적인 흡연, 음주자.
  3. 타인의 금품을 훔친 자.
  4. 환각제, 분드, 대마초 등 마약류 소지 복용 및 환각을 목적으로 사용한 자.
  5. 도박기구를 소지하거나 도박을 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7.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8. <삭제 2017.03.06>
  9. 이상 각 항에 상당하는 행위를 한 자.
  
- ⑤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등교정지’에 처할 수 있다.
  1. ‘사회봉사’ 징계를 받은 후, 동일 학년에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에 상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사회봉사’ 징계 중 개전의 정이 없는 자.
  3. 고사부정 및 동조 또는 이를 방조한 자.(당해 과목은 0점 처리한다)
  4. 금지된 과외수업을 받거나 과외지도를 한 자.
  5. 교권을 모독한 자.
  6. 상습적인 도박 행위자.
  7. 허가 없이 불건전한 단체나 서클을 조직을 했거나 이에 가입한 자. <개정 2016.03.21>
  8. 학교 질서를 혼란시킬 목적으로 학생들을 선동·조직하거나 모임을 꾀한 자.
  9. <삭제 2017.03.06>
  10. 교내 기물, 공공시설을 고의로 파괴한 자.
  11. 이상 각 항에 상당하는 행위를 한 자.
  
- ⑥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등교 정지’ 또는 ‘퇴학 처분’에 처할 수 있다.
  1. 연간 누적 별점이 20점인 자. <개정 2016.03.21>
  2.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고사 문제를 사전에 탐지했거나 절취한 자.
  3. 고사에 불응할 것을 선동했거나 이에 동조한 자.
  4. 상습적인 마약류 복용자.
  5. 외부의 불순 단체에 가입하거나 연계되어 불순행위나 정치성을 띤 활동을 한자.
  6. 불온문서를 고의로 은닉했거나 탐독 또는 제작, 게시, 낙서 및 살포한 자.
  7. 학생을 선동하여 학교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집단 행위를 주도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
  8. 성향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9. 형법상 유죄로 최종 판결을 받은 자.

10. ‘특별교육 이수’ 징계를 받은 후 동일 학년에서 재차 ‘특별교육 이수’ 에 상당하는 행위를 한 자.
11. ‘특별교육 이수’ 징계 중 개전의 정이 없는 자.
12. 재학 기간 중 ‘특별교육 이수’ 처벌을 3회 이상 받은 자.
13. 학교 내의 전산시스템에서 권한 밖의 정보를 조작하거나 유출한 자.
14. 남녀 간의 풍기문란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자.
  - 성매매, 성매수
  - 이성간의 동침
  - 이성간 숙박업소 출입
  - 유사성행위
  - 임신 및 출산
15. 이성의 기숙사에 무단으로 침입한 자.
16. 이상 각 항에 상당하는 행위를 한 자.